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6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7. 10. 16.
4. 회부일자 : 2017. 10. 24.

II.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원과 병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2018. 3. 1. 개원 예정)하고, 단설유치원인 서울세명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서울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18년 3월 1일로 폐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유치원 폐지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남구 자곡로 55(세곡동)]

2. 유치원 신설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양천로 11(방화동)]
 - 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등촌로 39길 71(등촌동)]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세명유치원 [강남구 자곡로 55(세곡동)]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17. 9. 7. ~ 9. 27.)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교육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63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고, 단설유치원 1개원과 병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하는데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단설 세명유치원 신설 및 병설 세명유치원 폐지의 건

- 세명유치원 신설의 건은 종전의 6학급(특수1학급 포함) 116명 규모의 서울세명초병설유치원을 동일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별도의 원장이 배정되고 유아의 특성에 맞춘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등 상대적으로 병설유치원에 비해 더 나은 교육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병설유치원 신설의 건(2건)

- 다음으로 병설유치원 신설의 건은 강서구에 위치한 개화초등학교와 등촌초등학교에 2018년 3월 1일자 개원 예정으로 각각 3학급 64명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개화초가 속한 강서1지역은 2018학년도 유치원 유아수용률이

35.7%에 불과하고, 등촌초가 속한 강서4지역 역시 유치원 유아수용률이 32%에 불과한 상황인바,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병설유치원의 설립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병설유치원 유아수용전망

신설 및 단설전환 유치원	권역		유아교육시설 정원			유아수용률 (%)	취학수요(명)	
	동	취원대상 유아수(명)	설립유형별	시설수 (개)	정원(명)		공립 희망	공립 과부족
개화초 병설유	강서1 (방화1~3동, 공항동)	4,208	공립유치원	4	376	35.7	1,997	△1,685
			사립유치원	9	1,127			
			계	13	1,503			
등촌초 병설유	강서4(화곡본동, 화곡1~2동, 화곡4동, 화곡8동, 등촌2동)	4,707	공립유치원	3	196	32.0	2,812	△2,684
			사립유치원	10	1,308			
			계	13	1,504			

○ 또한 현재 병설유치원 관련 시설공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개화초 병설유치원은 설계가 완료되고 12월 1일부터 공사착공이 실시되었으며, 등촌초병설유치원도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12월 11일부터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바,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1일 개원에는 사업추진 진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공정률 현황

(기준 : 2017.11.30.)

학교급	지원청	학교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비고
유치원(병설)	강서양천	개화초병설유	2017.12.1.	2018.2월	20%	2차추경 반영 설계완료
	강서양천	등촌초병설유	2017.12.8.	2018.2월	20%	2차추경 반영 설계완료
유치원(단설)	강남서초	세명유치원	별도 시설공사 없음			

○ 다만 동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설립되는 병설유치원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